

# 해외복수학위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9조의 2(협약에 의한 학위수여)에 근거하며,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외복수학위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외국의 협력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으로서 해외복수학위제에 대하여 양 대학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을 말한다.

**제4조 (지원자격)** ①복수학위과정의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당시 본교에서 4-5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출국 직전 학기 포함 4-6학기 이상 이수, 해당학년 수료 최저이수학점 취득한 자
3. 평점평균이 3.2 이상인 자
4. 전필·교필·채필의 경우 출국 직전 해당 학기까지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5.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소유한자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복수학위 운영형태에 따라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학기한 및 신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협약서와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과 신분을 유지한다.

**제6조 (선발시기 및 필요서류)** ①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학위이수신청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수학계획서 1부
4. 성적증명서 각 1부
5. 해당국 언어능력 증빙서류
6. 기타 교무처장이 제출을 요하는 서류

**제7조 (과건)** ① 본교는 협력대학의 규정과 요구자격에 의하여 입학통보를 받은 자를 협력대학에 파견한다.

②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제8조** (협력대학에서의 수학) ①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협력대학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본교의 전공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②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의 수학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수학 중 본교 총장의 승인 없이 자의로 수학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④ <삭제 2015.09.01.>

⑤ <삭제 2015.09.01.>

**제9조** (학점인정) ①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본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대학에서의 이수학점 및 성적은 학칙에 의하여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의 취득 학점 최대 인정범위는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④ 외국대학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른다.

⑤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협력대학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한다.

⑥ 학점의 인정범위, 교육과정 이수, 성적처리, 졸업요건, 학위수여 등의 사항은 관련 세부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등록 및 학위수여) ① 본교 학생은 유학기간 중 본교 등록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본교와 협력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11조** (등록금 납부) ① 연수자가 협력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협력대학 재학시점부터 협약학기까지는 본교 및 협력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협약학기를 초과한 학기부터는 수학 중인 협력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② 본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50%를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③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등록금 및 기타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대학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제12조** (규정 준수) ①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수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수학위제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수학위제 운영 관련 어학교육과정 관리
3. 복수학위제 운영 관련 어학교육교원 수급 관리

4. 복수학위제 운영 관련 학생 지도 관리
5.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업무 조정
6.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복수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조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